

수전설비 까치집 제거 중 감전에 의한 추락 사망

재해개요

2020년 03월 20일 10시 50분경 울산 울주군 청량읍 소재 ○○(주) 내에 위치한 수전설비에서 재해자(관리자, 남, 53세)이 까치집 제거 작업 중 감전되어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

재해발생현장



재해상황도



재해발생 원인

○ 전기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미실시

- 전기작업에 대해 유자격자가 실시하여야 하나 무자격자가 실시하였으며, 근로자가 충전 전로의 접근한계거리 이내로 근접하여 감전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해당 전로를 차단하거나 절연용 방호구 등을 설치하여야 하나 미실시
- 고압 및 특별고압의 전로에서 전기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활선작업용 기구 및 장치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나 기구 및 장치 없이 작업

※ 관련법규 : 규칙 제318조(전기작업자의 제한), 제321조(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)

○ 절연용 보호구 미지급 및 관리감독 미흡

- 감전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절연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착용하도록 관리·감독하여야 하나 미실시

※ 관련법규 : 규칙 제323조(절연용 보호구 등의 사용)

재해예방 대책

○ 전기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실시

- 감전위험이 있는 전로 등의 정비 작업은 반드시 유자격자가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며, 근로자가 고압 및 특고압 전선의 접근한계거리 이내로 근접하여 감전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 전에 해당 전로를 차단하거나 충전전로를 방호차폐하여야 함

○ 절연용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철저

- 충전부 부근에서 작업함으로써 감전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하여금 절연보호구(특별고압 충전전로 근접작업에 적합한 절연안전모, 절연장갑, 절연화, 방염복 등)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관리·감독하여야 함